

# 2019. 1. 22. 보도 자료

공보관실 02)708-3411 / 팩스 02)766-7757

국민과 함께한 30년  
헌법과 동행할 미래



헌법재판소  
Constitutional Court of Korea

## 제 목 : 1월 공개변론 안내

□ 헌법재판소는 오는 **1. 24.(목) 14:00** 대심판정에서 아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연번	사건번호 및 사건명	청구인 (대리인)	피청구인 (대리인)	변론 시간
1	2016헌라3 서울특별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	서울특별시 (법무법인(유한) 한결)	대통령 (정부법무공단)	14:00
2	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	성남시 외 2 (법무법인 장명 외 1)	대통령 (정부법무공단)	14:10
3	2015헌라2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	경상남도 사천시 (정부법무공단)	경상남도 고성군 (손지열 외 3)	14:20

4	2016헌라8	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	고창군 (법무법인 해마루)	부안군 (법무법인(유한) 바른 외 1)	14:30
	2018헌라2 (병합)	부안군과 고창군 간의 권한쟁의	부안군 (법무법인(유한) 바른 외 1)	고창군 (법무법인 해마루)	

붙임 : 관련사건(2016헌라8, 2018헌라2(병합)) 보도자료 1부. 끝.

# 보 도 자 료

## 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

[2016헌라8, 2018헌라2(병합)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등]

### [ 공 개 변 론 ]

헌법재판소는 2019년 1월 24일(목) 14:30 대심판정에서, ① 2016. 8. 29. 접수된 2016헌라8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사건과 ② 2018. 8. 9. 접수된 2018헌라2 부안군과 고창군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병합하여 변론을 열 예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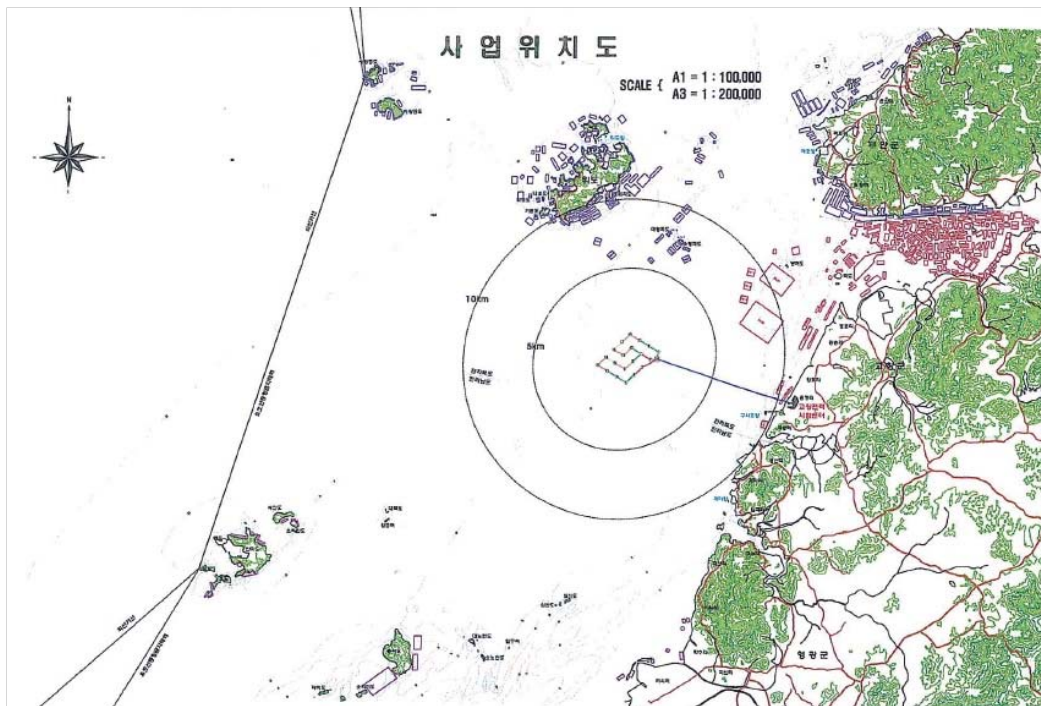
위 사건들은, ‘부안군의 서해안 해상풍력실증단지에 관한 공유수면 점·사용료 부과처분’와 ‘고창군의 곰소만에 대한 어업면허 처분’이 각 상대방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 및 그 전제로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이 쟁점인 사안으로,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들의 변론을 거쳐 해상경계를 확정하고 위 각 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.

## □ 사건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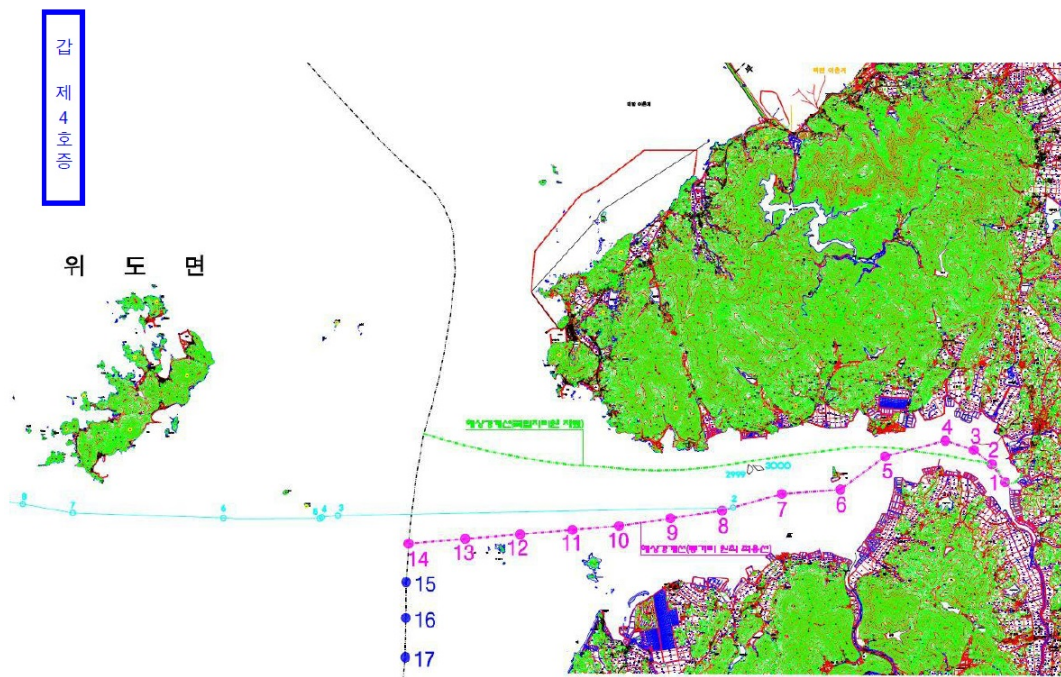
- 고창군과 부안군은 모두 전라북도 내에서 서해안을 해안선으로 하여 남북으로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.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곰소만은 북쪽으로는 부안군과 접해 있고, 남쪽으로는 고창군과 접해 있으면서, 그 사이에 형성된 동서로 긴 만이다. (위도는 부안군 관할, 죽도는 고창군 관할)



- **[2016헌라8]** 정부는 2010. 11.경 해상풍력발전단지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, 이에 따라 2012. 12. 7. (주)한국해상풍력이 설립되었다.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6. 3. 4. ‘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’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-38호)를 발표하였다. 위 승인 고시 및 그에 첨부된 ‘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문’에는 사업구역의 위치가 “해상: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 해역 일원”, “육상: 전북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 1268-4번지 일원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, 특히 발전소의 위치는 “부안군 소재 공유수면”으로 기재되어 있다(아래 [사업위치도](#) 참조). 이에 따라 부안군은 (주)한국해상풍력의 아래 사업위치에 관한 2016. 3. 4.자 공유수면 점·사용 신고를 수리하고(이하 ‘[이 사건 신고수리](#)’), 이후 2017. 1. 9.자, 2018. 1. 16.자, 2018. 6. 26.자로 공유수면 점·사용료 부과처분을 하였다(이하 ‘[이 사건 부과처분](#)’). 이에 고창군은 부안군의 이 사건 신고수리 및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고창군의 자치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.



- [2018헌라2] 고창군은 소속 주민에게 곰소만 2999 및 3000 구역에 위치한 어장(아래 갑 제4호증 도면 참조)에 대한 어업면허 처분을 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면허처분’). 이에 부안군은 고창군의 이 사건 면허처분으로 인하여 부안군의 자치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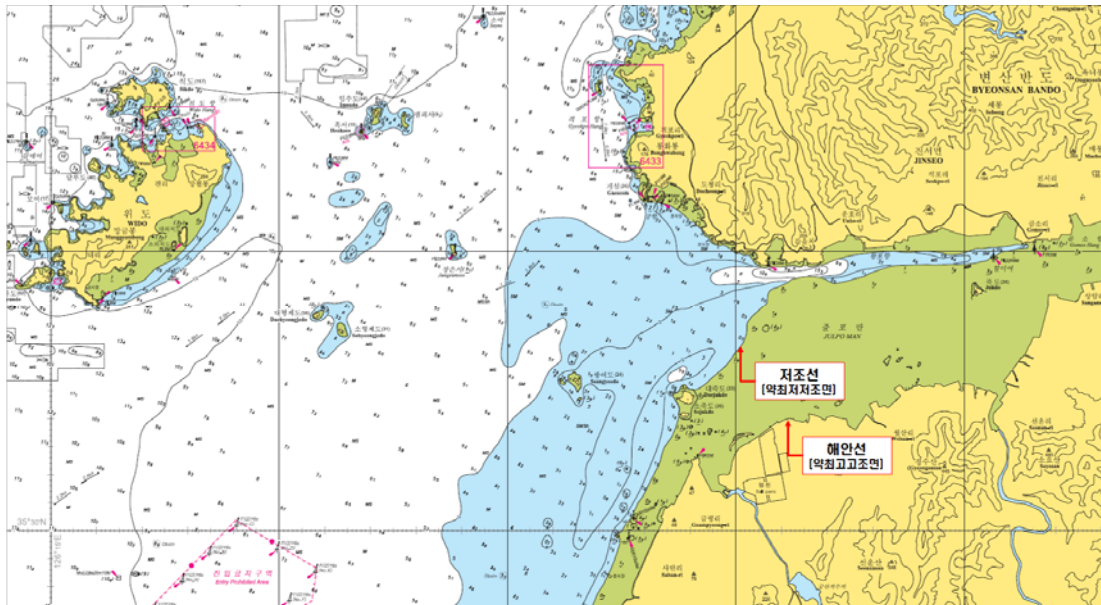


## 심판대상

-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부안군의 ‘이 사건 신고수리 및 부과처분’이 고창군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, ② 고창군의 ‘이 사건 면허처분’이 부안군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이다.

## 주요 쟁점

-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사업구역에 대한 해상 관할권이 고창군에게 속한다면 부안군의 위 사업구역에 대한 ‘이 사건 부과처분’으로 인하여 위 해역에 관한 고창군의 자치권한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고,
- 곰소만 2999 및 3000 구역에 대한 해상 관할권이 부안군에게 속한다면 고창군의 위 구역에 대한 ‘이 사건 면허처분’으로 인하여 위 해역에 관한 부안군의 자치권한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
- 결국 이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역에 대한 관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, 즉 해상경계선의 획정이다.



- ◎ 고창군 및 부안군 관련 해도 : 해안선은 만조시 육지(노란색)와 바다가 만나는 부분이고, 저조선은 간조시 갯벌(초록색)과 바다가 만나는 부분을 의미함.